

주 문

피고인 ■■■, ■■■을 각 징역 6개월에, 피고인 ■■■을 징역 2년 6개월에, 피고인 ■■■을 징역 1년 6개월에, 피고인 ■■■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.

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■■■, ■■■, ■■■에 대하여는 각 2년간, 피고인 ■■■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.

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.